

## 의료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동의서

연세대학교 의료원 산학협력단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본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하단 의견란에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주요 개정사항(취업규칙 개정(안) 전문은 의과학연구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1. 직원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함. (제3조, 제4조)
2. 월소정근무시간을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 (제15조 및 제31조삭제) 및 월급여의 구성을 기본급 및 연차수당 연 15일, 연장·휴일근로수당 월 7시간으로 함.  
: 과제 참여율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변동 없음.
3.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반영

### □ 인적사항 및 동의여부 작성(필수작성)

#### 1. 인적사항

생년월일 :	사번: Z	이름: (서명)
--------	-------	----------

#### 2. 동의여부(필수체크)

상기 본인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사를 표명합니다.

동의     비동의

#### 3. 기타의견(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)

※문의처 : 의과학연구처 최민성(T.80275 취업규칙 개정 문의)  
의과학연구처 김민애(T.80296 근로계약 급여 문의)